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6급 9명, 7급 8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4명(6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4명)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를 일부 조정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5급 3명)과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명(6급 3명)을 상호이체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3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

(5급 15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5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한시정원)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별표 5의 번호 7의 세무서란 중 “분당세무서, 인천세무서”를 “분당세무서, 용인세무서, 인천세무서, 김포세무서”로, 같은 란 중 “부산진세무서”를 “부산진세무서, 울산세무서”로 하며, 같은 표 번호 8의 세무서란 중 “시흥세무서, 용인세무서”를 “시흥세무서”로, 같은 란 중 “연수세무서,

김포세무서”를 “연수세무서”로, 같은 란 중 “금정세무서, 울산세무서”를 “금정세무서”로 하고, 같은 표 번호 11의 세무서란 중 “나주세무서”를 “나주세무서, 통영세무서”로 하며, 같은 표 번호 12의 세무서란 중 “거창세무서, 통영세무서”를 “거창세무서”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876”을 “877”로 하고, 일반직 계 “872”를 “8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16”을 “113”으로 하고, 세무주사 “231”을 “234”로 하며, 세무주사보 “154”를 “155”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03”을 “904”로 하고, 일반직 계 “899”를 “90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22”를 “118”로 하고, 세무주사 “237”을 “241”로 하며, 세무주사보 “159”를 “160”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089”를 각각 “20,09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073”을 “1,090”으로 하며, 세무주사 “4,321”을 “4,304”로 하고, 세무주사보 “4,515”를 “4,516”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197”을 각각 “20,198”로 하고, 행정사무관 “1,105”를 “1,110”으로 하며, 세무주사 “4,372”를 “4,367”로 하고, 세무주사보 “4,518”을 “4,519”로 한다.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2]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5조 관련)

제3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세무주사	3

제3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세무주사	1
세무주사보	1

제3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6일)

총계	17
일반직 계	17
세무주사	9
세무주사보	8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2의 세무주사 2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8장 한시조직</u> <u><신 설></u>	<u>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u>제35조(한시정원)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u> <u>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u> <u>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u>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0의2
의 행정사무관 10명은 2024년 1
1월 15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1월 1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
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세무
주사 10명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 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
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별표 7의2
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15명(행
정사무관 13명, 행정사무관 또
는 전산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삭 제>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
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
별표 7의2의 세무주사 2명, 별
표 10의2의 세무주사 13명, 세
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전
산주사 1명으로 본다.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6</u>	<u>877</u>	+1
•	•	•	
•	•	•	
일반직 계	<u>872</u>	<u>873</u>	+1
•	•	•	
•	•	•	
행정사무관	<u>116</u>	<u>113</u>	-3
•	•	•	
•	•	•	
세무주사	<u>231</u>	<u>234</u>	+3
•	•	•	
•	•	•	
세무주사보	<u>154</u>	<u>155</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03</u>	<u>904</u>	+1
•	•	•	
•	•	•	
일반직 계	<u>899</u>	<u>900</u>	+1
•	•	•	
•	•	•	
행정사무관	<u>122</u>	<u>118</u>	-4
•	•	•	
•	•	•	
세무주사	<u>237</u>	<u>241</u>	+4
•	•	•	
•	•	•	
세무주사보	<u>159</u>	<u>160</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089</u>	<u>20,090</u>	+1
일반직 계	<u>20,089</u>	<u>20,090</u>	+1
·	·	·	
·	·	·	
행정사무관	<u>1,073</u>	<u>1,090</u>	+17
·	·	·	
·	·	·	
세무주사	<u>4,321</u>	<u>4,304</u>	-17
·	·	·	
·	·	·	
세무주사보	<u>4,515</u>	<u>4,516</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197</u>	<u>20,198</u>	+1
일반직 계	<u>20,197</u>	<u>20,198</u>	+1
·	·	·	
·	·	·	
행정사무관	<u>1,105</u>	<u>1,110</u>	+5
·	·	·	
·	·	·	
세무주사	<u>4,372</u>	<u>4,367</u>	-5
·	·	·	
·	·	·	
세무주사보	<u>4,518</u>	<u>4,519</u>	+1
·	·	·	
·	·	·	